아름다운 변화 양주

【검토보고서】

2015. 11. 20(금)
제263회임시회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전태언】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감사담당관)

○ 제출일 : 2015년 11월 04일

○ 검토일 : 2015년 11월 12일

2.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 검토의견 중[양주시,연천군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결과 회신{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11926(2015.10.6.)}] 시민단체의 범위를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

○ 시민단체의 범위를 상위법과 마찬가지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제4항[1] 및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 정책 및 내용검토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3]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양주시 조례에서는 대상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경기도로부터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음.

---

1)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2)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 형식검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

라. 절차검토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